[별지1]

우체국예금 약관 전문

2015. 11. 30.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목 차

< 기본 약관 >

1 우체국예금거래 기본 약관 ····· 1
2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약관 ····· 7
3 거치식예금 약관 ····· 9
4 적립식예금 약관 ····· 10
5 비과세 종합저축 약관 ····· 12

< 상품 약관 >

1-1 듬뿍우대저축예금 특약 ····· 15
1-2 e-Postbank예금 특약 ····· 16
1-3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 18
1-4 기업든든MMDA통장 특약 ····· 20
1-5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 특약 ····· 21
1-6 우체국 Young利한 통장 특약 ····· 23
1-7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특약 ····· 26
1-8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 특약 ····· 28
1-9 우체국 다드림통장 특약 ····· 30

2-1 챔피언정기예금 특약 ····· 37
2-2 e-postbank 정기예금 특약 ····· 39
2-3 실버우대정기예금 특약 ····· 41
2-4 주니어우대정기예금 특약 ····· 44
2-5 이웃사랑정기예금 특약 ····· 47
2-6 2040$^{+\alpha}$정기예금 특약 ····· 51
2-7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 55
2-8 스마트 정기예금 특약 ····· 58

3-1 2040$^{+\alpha}$자유적금 특약 ····· 60
3-2 인터넷 2040$^{+\alpha}$자유적금 특약 ····· 63
3-3 우체국 Smart 퍼즐적금 특약 ····· 65
3-4 우체국 재형저축 특약 ····· 69
3-5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 74
3-6 우체국 다드림 적금 ····· 79

4-1 환매조건부채권 특약 ····· 84

1.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예금거래 기본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은 우체국과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체국은 이 약관을 창구에 놓아두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우체국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예금주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이하 '개설우체국'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 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TV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예금주는 우체국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 등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 전산통신기기 이용 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예금주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기'라 한다)에 의하여 예금주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우체국에 내국할 수 없는 경우 예금주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 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 • 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예금주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입 금】
①예금주는 현금이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표 • 증서 (이하 '증권'이라 한다)로 입금할 수 있다.
②예금주는 현금이나 증권 등으로 계좌송금(예금주가 개설우체국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우체국 또는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주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예금주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우체국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우체국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입금하는 증권이 수표일 때 우체국은 소정의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①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우체국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우체국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의 경우 결제를 확인한 때

②제1항 제3호에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우체국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우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증권의 부도】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우체국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예금주(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체국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우체국에서 예금주(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 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

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하였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이 자】

①이자는 10원을 단위로(10원미만 절사)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 가계수표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②우체국은 예금종류별 이율표를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 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 • 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금리를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치식 • 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 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⑤예금주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0조【지급 • 해지청구】

①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 •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예금주가 자동이체 •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에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시기】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에 지급한다.

②거치식 • 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 • 변경사항 신고】

①예금주는 통장 • 도장 • 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 • 도난 • 멸실 • 훼손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에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예금주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예금주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우체국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우체국에 예금주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 • 도장 • 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신고인이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우체국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신고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통보시 통화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우체국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금주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일반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할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우체국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예금주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예금주가 제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범위】

①우체국은 예금지급청구서 •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

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 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 변조 또는 도용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우체국이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우체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우체국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 변조 • 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예금주가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5항의 신고 또는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우체국은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예금주가 개설우체국이 아닌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우체국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예금주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예금주 잘못으로 통장 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우체국창구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우체국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예금주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체국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예금의 비밀보장】
①우체국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주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우체국은 예금주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및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 계좌번호 • 비밀번호 (자동응답서비스(ARS) 는 계좌번호 •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약관변경】

①우체국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약관변경의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금주에게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예금주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 예금주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예금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예금주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우체국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약관적용의 순서】

①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 • 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2조【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한 업무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제23조【이의 제기】

예금주가 우체국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분쟁처리기구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예금거래 특례】

① 저축예금 가입자 중 가계수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청구서, 현금카드 또는 가계수표에 의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장에 의한 우편대체개인계좌 이용과 전화접수 우편환 송금제도 서비스 및 우편주문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우체국과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경조환 전화송금 서비스 및 우편주문판매 서비스는 별도의 약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이자】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 다음날(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다만, 우체국이 따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통예금 : 매년 6월 넷째주 토요일, 12월 말일
2. 자유저축예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주 토요일

②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차기 원가일 포함) 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우체국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한다.

제4조【거래중지계좌】

우체국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 계좌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예금주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등을 신청할 때에는 우체국은 곧 거래재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제5조【자동이체】

① 급여, 연금배당금 등 정기적 수입금 및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등 정기적 지급금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상의 제반 약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지급금의 자동이체는 이체지정일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인출하여 자동 납입되므로 이체지정일의 지급가능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동이체 지정일에 지급 가능액이 부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자동이체 처리를 못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거치식예금 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예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일할 계산**하되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만기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④ 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적립식 예금 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저축금의 입금】

예금주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이자】

① 이 예금의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은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② 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③ 예금주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은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입금지연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④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체국은 계약금액만을 지급한다.

⑤ 이 예금의 이자는 원을 단위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제 5조 【만기도래전 지급】

① 월부금을 전회 납입하고 만기일(이연 만기일) 이전에 해약하는 것으로서 지연일수로 인해 만기일이 이연된 경우와 월부금 완납후 당초 만기일 이

전에 해약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일반 해약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만기도래전 해약지급이자액 계산시에는 중도해약 지급이자와 만기도래전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이자가 많은 것을 지급한다. 단, 약정지급이자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제6조【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① 예금주가 만기일 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만기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② 예금주가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③ 예금주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7조【자유적립식예금 특례】

① 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 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③ 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조,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우체국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예금주에 통보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비과세 종합저축 약관

제1조【적용범위】

비과세종합저축 (이하 '저축'이라 한다)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이 취급하는 각종 예금, 환매조건부채권 등(이하 '예금 등'이라 한다)의 약관(특약 포함)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가입대상자】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단, 2015년 가입자 : 만 61세 이상, 2016년 가입자 : 만 62세 이상, 2017년 가입자 : 만 63세 이상, 2018년 가입자 : 만 64세 이상)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3조 【대상 예금 등】

우체국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비과세 예금 등은 제외한다.

제4조 【예치한도】

①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5천만원(단,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한도에 포함한다.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다.

제5조 【예치한도 산정】

① 거치식예금 등은 이 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한다.

② 정액(정기)적립식 예금 등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예치한도 변경】

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우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비과세처리】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 (단, 비과세 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표시방법】

이 저축 가입자는 신규가입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통장의 표지 내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적용이율】

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우체국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우체국은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저축의 전환여부】

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다.

제12조 【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

제11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가입한 때는 거래처가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계좌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3조 【명의변경 등】

명의변경 및 양수·양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

제14조 【예치한도 초과 입금제한에 따른 책임】

예치한도 초과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타행환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수표의 지급결제 불가,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비과세 종합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① 비과세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고객별 비과세종합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기관은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수익자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듬뿍우대저축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듬뿍우대저축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제4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6조 【지급방법】

이 예금을 찾을 때는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제7조 【이자계산】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아래 기준일에 계산하여 원가일에 원금에 더한다.

1. 이자계산 기준일 : 매월 넷째주 토요일(12월은 말일)
2.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

② 이자계산은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고시된 금액별 해당 이율을 적용하여 매일 이자를 계산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e-Postbank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e-Postbank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현금카드 이용약관, 무통장/무카드거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1인 다계좌가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인터넷 전용상품이다.

제3조【이자율】

① 기본금리 : 이 예금의 금리는 별도 고시하되, 변경될 경우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변경된 금리를 적용한다.

② 우대금리 :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10만원이상 - 연 0.2%
2. 결산기간 중 급여계좌로 연동 - 연 0.2%
3. 결산기간 중 우체국 VM모바일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이용(이체, 조회, 출금 등 거래실적이 있는 고객) - 연 1.0%
4. 결산기간 중 우체국 체크 및 제휴카드(신용 또는 체크) 보유 또는 신규발급 -연 0.1%

③ e-Postbank예금에서 저축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저축예금 이자율로 변경된다.

제4조【거래방법】

①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입금 및 지급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채널(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VM 또는 IC칩 기반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② 다만, 고객이 요청하거나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자금융채널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창구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체국창구에서 카드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무통출금이 가능하다.

제5조【가입 및 전환 또는 해지】

① 우체국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금의 가입 및 e-Postbank예금으로의

전환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인터넷뱅킹에서 예금의 해지 시 다른 출금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뱅킹 약정은 존속되나, 이 예금을 해지하면 출금계좌가 없는 경우 인터넷뱅킹약정도 해지된다.

제6조【저축예금으로 전환】

① 이 예금으로 전환한 예금주는 저축예금으로 재전환할 수 있으나 다시 이 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또한, 이 예금에서 저축 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통장 재발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 이 예금에 신규 가입한 예금주는 저축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제7조【부가서비스】

이 예금 가입자에 대하여 우체국금융 자동화기기에서 우체국 카드로 출금시 영업시간외 출금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기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전자금융약정, 현금카드발급, 금융자동화기기 약정, 자동이체약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개인에 한하여 계좌대월 약정이 가능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3.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의 성격】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②「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③「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제4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6조【입금제한】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는 입금할 수 없다.

제7조【거래제한】
1. 이 예금은 우체국이 상계할 수 없다.
2.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다.
3. 이 예금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4.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6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이율】

1.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되,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 고시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2. 우대이율은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연 0.5%p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 산출은 전결산일부터 당결산기준일까지의 일잔액에 대한 평균금액으로 한다.
3.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9조【이자계산 및 지급방식】

1.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은 말일로 한다.
2. 이 예금의 정기이자는 적수 누계액×이율(%)/365로 계산한다.
3.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0조【우대서비스 제공】

1. 이 예금을 정상 유지할 경우에는 아래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폰・모바일(IC칩/VM/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면제(단, 타행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는 제외)
   ②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 우체국 CD/ATM을 이용한 시간외 현금인출, 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③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④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2.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게시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업든든MMDA통장 특약

제1조 【적용범위】

기업든든MMDA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로 한다.

② 이 예금은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제4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6조 【지급방법】

이 예금을 찾을 때는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제7조 【이자계산】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아래 기준일에 계산하여 원가일에 원금에 더한다.

1. 이자계산 기준일 : 매월 넷째주 토요일(12월은 말일)
2.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

② 이자계산은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고시된 금액별 해당 이율을 적용하여 매일 이자를 계산한다.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우체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2013. 8월 결산분부터 적용)

1-5.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국민연금법』제54조의2,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 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 수급자(1인 1계좌)이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시 금액은 0원이며 잔액은 제한이 없다.

제5조【입금제한】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 (이하 "보호금액"라 한다)이내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한다.

② 이 예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하다.

③ 관련법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보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입금이 불가하다.

제6조【적용이율】

① 이율은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게시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은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이자계산기간 중 평균잔액별 이율)을 합산한다.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7조【이자계산 및 지급방식】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③ 이자계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또는 전 지급일)부터 당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8조【우대서비스 제공】

① 이 예금은 아래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폰・모바일(IC칩/VM/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면제(단, 타행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는 제외)
2.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 우체국 CD/ATM을 이용한 시간외 현금인출, 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3.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4.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9조【과세부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한다.

제10조【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우체국이 상계할 수 없다.

②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다.

③ 우편대체 계좌대월의 계좌 및 인터넷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나 대금 납부목적의 모계좌로 지정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6. 우체국 Young利한 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Young利(영리)한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당시 만 18세 이상 ~ 만 35세 이하 실명의 개인이다. (1인 1계좌)

제4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적용이율】

① 이율은 가입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게시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7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계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또는 전 지급일)부터 당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8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9조【우대서비스 조건】

① 아래 조건에서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기본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휴대폰 요금 등 각종 공과금, 적금 등 계좌 간 자동이체 약정 · 유지
2. 전자금융 정기예금 또는 적금의 모계좌로 지정 · 유지
3.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체국 Young利한 체크카드』 1회 이상 이용

※ 단,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 기준에 따라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체국의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② 아래 추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체국 Young利한 체크카드』10만원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제10조【우대서비스 제공】

① 이 예금은 아래의 기본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즉시이체 수수료 면제
2. 자동화기기수수료 면제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시간외 현금인출, 시간내·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② 이 예금은 아래의 추가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타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시간내·외 현금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 타금융기관의 범위 :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CD공동망 참여 금융회사
(단, 편의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제외)

제11조 【우대서비스 제공기간】

① 신규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조건 충족여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우대서비스는 고객 연령 만 35세까지 적용한다. 단, 가입시부터 만 35세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간 적용한다.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 조건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다.

제12조【과세부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3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할 수 없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7.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②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5조【적용이율】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6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 면제기간은 제3조의 가입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면제기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는 선거일정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 예비후보자등록일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일
2.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 예금 신규 가입일(약정일) ~ 선거일 이후 3개월 해당 월의 말일까지

※ 약정일 : 선거마다 지정되는 우대서비스 제공 시작일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법인가입자의 경우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해당 서비스는 제외된다. 다른 은행(전자금융, 자동화기기 포함)을 통한 송금(이체) 수수료와 타행카드로 우체국자동화기기

(CD/ATM)를 이용한 송금(이체)시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1. 우체국 창구, 전자금융(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우체국간 또는 다른 은행으로 송금(이체) 수수료 면제
2.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3. 우체국 창구, 전자금융(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이 통장에 송금(이체) 시 수수료 면제
4. 예금잔액증명수수료,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제공수수료 면제
5. 통장(인감)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6. 카드발급 수수료 면제
7. “예금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 면제 (최대 5회선)

제7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계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또는 전 지급일)부터 당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8조【과세부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9조【기타】

이 예금은 양도할 수 없으며, 계좌대월 약정이 불가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1-8.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법인, 개인사업자, 고유번호(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다.

제4조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5조【적용이율】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6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 말일로 한다.

② 이자계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또는 전 지급일)부터 당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7조【제한사항】

이 예금의 출금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하다.

제8조【과세부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9조【기타】

이 예금은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이체, 전자금융, 결제성계좌, 계좌대월 등 약정이 불가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9. 우체국 다드림 통장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다드림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패키지별로 구분하며 1인 다계좌가 가능하다.

패키지 구분	주니어	직장인	실버	베이직
가입대상자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금융기관 제외)	실명의 개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금융기관 제외)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6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수고객 우대이율은 우체국 창구를 통한 상품 가입에 한하며, 패키지별 가입 구분 없이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일 경우 공통으로 적용한다.

③ 채널 우대이율은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상품 가입 시 패키지별 가입 구분 없이 공통으로 적용한다.

④ 실적 우대이율은 패키지별로 가입 및 거래 실적에 따라 적용한다. (단, 베이직 패키지의 경우 실적 우대이율 미 제공)

⑤ 이 예금의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 우대이율 제공 조건 >

우수고객 우대이율

o 최고 연 0.1%p

실 적	우대이율
1)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연 0.1%p

채널 우대이율

o 최고 연 0.1%p

실 적	우대이율
2) 인터넷 ·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시	연 0.1%p

실적 우대 이율

주니어

o 최고 연 0.4%p

실 적	우대이율
3) 결산기 평잔 10만원 이상	연 0.3%p
4) 우체국 어린이 전용 보험료 자동이체	연 0.1%p

직장인

o 최고 연 1.0%p

(연 %p)

실 적	고객군별 우대이율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5) 전월 급여이체 시 (단, 신규는 약정기준)	0.4	-	-	-
6)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	0.3	0.3	0.3
7)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	0.2	0.2	0.2
8)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	0.2	0.2	-
9)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	0.3	-	-	0.2
10)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	0.3	0.3	0.3	0.3

<table>
<tr><td rowspan="2">실적
우대
이율</td><td>실 버</td><td>o 최고 연 2.0%p
<table>
<tr><th colspan="2">실 적</th><th>우대이율</th></tr>
<tr><td rowspan="3">11) 결산기
평잔</td><td>50만원 이하</td><td>연 1.2%p</td></tr>
<tr><td>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td><td>연 1.4%p</td></tr>
<tr><td>100만원 초과</td><td>연 1.6%p</td></tr>
<tr><td colspan="2">12)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td><td>연 0.4%p</td></tr>
</table>
※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 : 연 0.4%p 적용기준
-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적용됨 (익월 말까지는 연금이체 실적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익익월부터 4대연금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td></tr>
<tr><td>베이직</td><td>o 별도 실적 우대이율 미 제공</td></tr>
</table>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우대이율 조건을 재확인하여 거래 실적에 따라 변동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1. 우수고객 우대이율은 우체국 창구로 상품 가입 시 적용되며, 우수고객은 매 결산일 현재 우수고객인 경우 (단, 우편 우수고객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우수고객인 경우)
2. 채널 우대이율은 우체국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상품 가입 할 경우
3. 결산기 평잔 10만원 이상은 매 결산기간 중 평균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4. 우체국 어린이 전용 보험료 자동이체는 매 결산일 현재 우체국 어린이 전용 보험료 자동이체인 경우
5. 전월 급여이체는 우체국 급여 약정 거래를 한 1인 1계좌에 한하여 매 결산일 현재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이체 시' 또는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 실적'이 전산상 확인 되는 경우

   ※ 약정을 한 해당 결산기간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다음 결산기간부터는 이용실적이 확인되어야 우대이율 제공 (단, 신규 급여이체인 경우 약정일로부터 3개월까지 실적에 상관없이 우대이율 제공)
6.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은 매 결산일 현재 이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으며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약정을 한 해당 결산기간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다음 결산기간부터는 이용실적이확인 되어야 우대이율 제공

7.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8. 급여이체 모계좌, 9.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은 매 결산일 현재 이 계좌로 해당 모계좌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10.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은 매 결산기간 중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1. 결산기 평잔 구간별 실적은 이 계좌로 4대 연금 수령 실적이 있고 매 결산기 중 평균 잔액이 각 금액 구간별 실적에 해당되는 경우

※ 4대 연금 실적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 입금되거나 입금 내역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글자가 있는 경우에만 실적에 해당되며, 개인이 입금한 것은 제외

12.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처음 개설한 고객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우대이율을 적용하되 익월 말일까지는 연금이체 실적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익익월부터 연금이체 실적 체크 후 적용

※ 수시입출식 예금 첫 고객 제외 대상

- 활동계좌, 정리계좌 중 수시입출식 예금을 1개 이상 보유한 고객
- 1년 이내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해지 후 재가입한 고객
- 단, 국고 귀속된 수시입출식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첫 고객에 해당

제9조【이자계산】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자 계산기간(결산기간)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1조【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에 대하여 우체국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다드림 통장 계좌별 예금, 보험 거래 실적에 따라 다드림 카드에 포인트 (1포인트=1원) 통합 적립
2. 다드림 통장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다드림 카드 발급 시점에 포인트 서비스 제공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하여 제공
3. 다드림 카드 발급 시점 해당월(1일~말일)의 다드림 통장 실적을 체크하

여 익월 5일 다드림 카드에 포인트 적립(단, 다드림 카드를 다드림 통장보다 먼저 발급한 경우 다드림 통장 개설 시점 해당월의 다드림 통장 실적을 체크하여 익월 5일 다드림 카드에 포인트 적립)

4. 예금·보험 실적에 따른 포인트는 월 최대 계좌당 1만 포인트 적립

o 포인트 제공 최대한도(월) : 예금 5천 포인트, 보험 5천 포인트

* 우편이용 및 알뜰폰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는 다드림 체크카드에서 별도 제공

o 다계좌인 경우, 각 계좌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월 최대 1만 포인트(예금 5천 포인트, 보험 5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적립

5. 포인트 제공 기준

<table>
<tr>
<td>예금</td>
<td>자동이체
이용실적</td>
<td>
<table>
<tr><th>구 분 (월)</th><th>1좌당 제공 포인트 (월)</th></tr>
<tr><td>5천원 이상 ~ 1만원 미만</td><td>200</td></tr>
<tr><td>1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td><td>400</td></tr>
<tr><td>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td><td>800</td></tr>
<tr><td>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td><td>1,200</td></tr>
<tr><td>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td><td>1,600</td></tr>
<tr><td>50만원 이상</td><td>2,000</td></tr>
</table>
※ 다드림 통장의 공과금[주] 및 우체국 적립식예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주 : 공공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우체국 창구에서 약정한 자동이체)
※ 다계좌일 경우라도 계좌별 합산 월 최대 2,000포인트 초과 불가
</td>
</tr>
<tr>
<td>예금</td>
<td>다드림
체크카드
이용실적</td>
<td>
<table>
<tr><th>구 분 (월)</th><th>1좌당 제공 포인트 (월)</th></tr>
<tr><td>5천원 이상 ~ 10만원 미만</td><td>300</td></tr>
<tr><td>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td><td>600</td></tr>
<tr><td>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td><td>1,200</td></tr>
<tr><td>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td><td>1,800</td></tr>
<tr><td>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td><td>2,400</td></tr>
<tr><td>50만원 이상</td><td>3,000</td></tr>
</table>
※ 다드림 통장을 보유하고 다드림 체크카드를 이용한 실적
※ 카드사용 승인 취소건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
※ 다계좌일 경우라도 계좌별 합산 월 최대 3,000포인트 초과 불가
</td>
</tr>
</table>

<table>
<tr><td rowspan="2">보험</td><td>우체국
보험료
자동이체
이용실적</td><td>
<table>
<tr><th>구 분 (월)</th><th>1좌당 제공 포인트 (월)</th></tr>
<tr><td>1천원 이상 ~ 1만원 미만</td><td>200</td></tr>
<tr><td>1만원 이상 ~ 5만원 미만</td><td>400</td></tr>
<tr><td>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td><td>600</td></tr>
<tr><td>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td><td>800</td></tr>
<tr><td>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td><td>1,000</td></tr>
<tr><td>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td><td>1,200</td></tr>
<tr><td>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td><td>1,600</td></tr>
<tr><td>50만원 이상</td><td>2,000</td></tr>
</table>
※ 다드림 통장에서 우체국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한 실적
※ 다계좌일 경우라도 계좌별 합산 월 최대 2,000포인트 초과 불가
</td></tr>
<tr><td>우체국
연금보험
연금액
수령실적</td><td>
<table>
<tr><th>구 분 (월)</th><th>1좌당 제공 포인트 (월)</th></tr>
<tr><td>1천원 이상 ~ 5만원 미만</td><td>300</td></tr>
<tr><td>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td><td>600</td></tr>
<tr><td>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td><td>900</td></tr>
<tr><td>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td><td>1,200</td></tr>
<tr><td>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td><td>1,500</td></tr>
<tr><td>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td><td>1,800</td></tr>
<tr><td>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td><td>2,100</td></tr>
<tr><td>6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td><td>2,700</td></tr>
<tr><td>80만원 이상</td><td>3,000</td></tr>
</table>
※ 다드림 통장으로 우체국 연금보험 연금액을 수령한 실적
※ 다계좌일 경우라도 계좌별 합산 월 최대 3,000포인트 초과 불가
</td></tr>
</table>

② 이 예금에 대하여 월 평잔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월 평잔 50만원 이상 계좌에 각종 수수료 통합 월 10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전자금융 타행 이체와 예금잔액증명 수수료는 월평잔 조건 충족 시 횟수 제한없이 면제)

2.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적을 말일자를 기준으로 월 평균 잔액을 산정하여 50만원 이상인 경우 익월 5일부터 익익월 4일까지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급여이체 고객 및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고객은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며, 신규 급여이체자는 약정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실적에 상관없이 우대서비스 적용

3. 수수료 면제 서비스 내용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우대서비스</th><th>비고</th></tr>
<tr><td colspan="3">우체국간 온라인 송금</td><td>면제</td><td rowspan="6">o 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통합 월 10회 면제</td></tr>
<tr><td rowspan="3">우체국
자동화기기 이용</td><td>현금인출</td><td>영업시간 외</td><td>면제</td></tr>
<tr><td rowspan="2">타행계좌이체주)</td><td>영업시간 내</td><td>면제</td></tr>
<tr><td>영업시간 외</td><td>면제</td></tr>
<tr><td colspan="3">현금IC카드 / ONE Plus 카드 발급</td><td>면제</td></tr>
<tr><td colspan="3">자기앞수표 발행</td><td>면제</td></tr>
<tr><td colspan="3">통장 재발행</td><td>면제</td></tr>
<tr><td colspan="3">전자금융 타은행 이체</td><td>면제</td><td rowspan="2">o 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횟수 제한없음</td></tr>
<tr><td colspan="3">예금잔액증명</td><td>면제</td></tr>
</table>

주) 자동화기기에서의 타행계좌이체는 다드림 통장에서의 이체거래에 한함(신설)

※ 월별 수수료 면제 잔여 횟수는 다음달로 이월 불가하며, 대량이체 거래의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다.

제12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제13조【기타】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 상계가 가능하다. (단, 주니어 패키지 가입자 제외)

② 이 예금은 전자통장 약정,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다드림 패키지 우대서비스」에 따라 다드림 통장에서 특별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1. 챔피언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챔피언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및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저축의 종류는 정기예금이다.

제3조【저축한도 및 가입기간】

1.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며,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2.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0일이상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월단위, 일단위, 정할 수 있다 .(단, 월단위 가입은 가입기간이 2월이상이어야 하며, 1년 확정형 가입은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이자계산】

①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단수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단, 1년확정형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연복리로 이자계산한다.)

제5조【이율적용방식 및 이자지급방식】

① 이율적용방식은 확정금리형, 1년확정형, 이자지급방식은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확정금리형은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며, 1년확정형은 가입일 및 가입일로부터 매 1년 응당일의 1년만기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을 매 1년간 적용한다.(단, 1년 확정형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매 1년 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영업일을 응당일로 하며,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응당일로 한다.)

③ 예금주는 신규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율적용방식 및 이자지급방식에서 각각 하나를 선택한다.

제6조【중도이자지급】

①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만기일 전 2회까지 이미 경과한 일수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월이자지급식 이율을 적용한다.
② 중도이자지급은 경과일수에 대한 이자를 일괄지급하여야하며 경과일수에 대한 이자의 일부지급은 불가능하다.
③ 중도이자지급이 있었던 경우에 해지시 지급이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만기일시지급식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분할해지】

①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제8조【이율적용】

만기해지, 중도해지, 만기후해지, 분할해지 지급하는 경우 적용이율은 가입당시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

① 챔피언정기예금을 우체국 인터넷뱅킹 서비스(www.epostbank.go.kr)를 통하여 가입 등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입대상은 개인에 한한다.
③ 신규가입시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은 발행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등록한 출금계좌(이하 모계좌라 한다)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계좌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자지급시 또는 해지시 이자 또는 원리금은 모계좌로 자동 이체되며, 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이자는 매월별 계약응당일에 모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2. e-Postbank 정기예금 특약

제1조【특약의 적용】

e-Postbank정기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1인 다계좌가 가능하다.

제4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월단위, 연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6조【기본금리】

기본금리는 신규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우대금리】

①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② 인터넷뱅킹 우대금리 : 신규가입일 현재 기간별 우체국장 우대금리 적용

③ 다음 각호에 해당 시에 항목당 우대금리 적용

1. 우체국 인터넷 판매상품주1」 기가입 또는 예금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 가입하고 예치기간동안 정상계좌 유지시 연 0.2%

   ※ 주1 : 판매중인 상품 5종 : e-Postbank예금,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 인터넷 가계우대정기적금, 인터넷 웰빙우대저축예금, 인터넷 듬뿍우대저축예금

2. 예금 가입당시 우체국계좌 자동이체약정이 2건 이상 연 0.2%

④ 우대금리는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제8조【이자지급방식】

①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만기해지는 가입당시 정한 이율을 적용하고 중도해지, 만기후해지, 분할해지는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분할해지】

① 최초 가입액의 90% 범위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분할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② 분할해지는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며 최소 1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등록한 출금계좌(이하 “모계좌”라 한다)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등급별 이용한도액 및 이용수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해지시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된다.

제12조【과세부분】

일반과세, 생계형, 세금우대로 가입 가능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이자계산)는 2011년 11월 11부터 시행한다.

2-3. 실버우대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실버우대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저축의 종류는 정기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이며 1인 1계좌로 한한다.

제4조【저축한도 및 가입기간】

①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하며,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②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본이율】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제6조【우대이율】

①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실버금리 : 만 50세 이상의 실버고객 연 0.1%p

③ 보너스금리 : 다음 각 호에 해당시에 각 항목당 연 0.1%p씩 최고 연 0.3%p까지 우대이율을 적용, 단 제2호는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 수령한 퇴직금(최소 1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대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을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수령하는 고객
2. 공무원, 군인, 교직원, 회사원 등의 퇴직금을 동 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3. 우체국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이며 자동이체약정 2건 이상인 경우

4. 우체국 체크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실적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④ 우체국장전결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전결금리 적용

⑤ 우대금리는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제7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③ 우대이율 항목 중 아래의 경우는 신규 가입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하다.

1.「퇴직금 예치」는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신규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가입일까지) 수령한 퇴직금(최소 1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퇴직금 명세서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4대연금 수령 고객」은 신규 가입시 증명서(연금수령확인서, 우체국 요구불예금 통장 등)를 제출하거나 요구불예금 전산 조회(전산 조회 기준일 : 신규가입일 전월 1일부터 신규가입일까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3.「요구불예금 거래실적」은 요구불예금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 기준일은 최근 3개월(신규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가입일 까지)로 한다.

4.「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 기준일은 최근 3개월(신규가입일이 포함된 월의 전월 3개월)로 한다.

제8조【이자지급방식】

① 이자지급방식은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자지급일이 휴일 또는 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그 익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후 이자지급은 휴일기간에 대하여 기본금리, 실버금리, 우체국장전결금리를 합하여 지급한다.

④ 예금주는 신규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단수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중도해지】

신규 가입시의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11조【만기후해지】

만기일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당시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분할해지】

①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천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가입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세금관계】

일반과세,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 가능하다.

제14조【기타】

① 이 예금은 우수고객우대금리, 고액예금우대금리 및 본부장 전결금리 지급이 불가하다.

② 질권설정은 우체국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4. 주니어우대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주니어우대정기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 기본 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저축의 종류는 정기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이며 1인 1계좌에 한한다.

② 단,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는 1인 3계좌 까지 가능하다.

제4조【저축한도 및 가입기간】

①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며, 최고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②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본금리】

기본금리는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제6조【우대금리】

①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체국장우대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금액별 금리 적용

③ 주니어금리 : 만 19세 미만의 주니어고객 연 0.1%p

④ 보너스금리 :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항목 당 연 0.1%p씩 우대금리를 적용(최고 연 0.1%p까지)

1.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2. 형제, 자매, 남매 동시 가입

⑤ 우대금리는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제7조【이율적용 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금리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금리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기본금리는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③ 우대금리 항목 중 신규 가입 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1.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기 전환가입」은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기 해지일과 주니어우대정기예금 신규 가입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2. 「형제, 자매, 남매 동시 가입」은 신규 가입일이 동일하여야 하며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가족관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자동 재 예치 시 우체국장우대금리, 주니어금리 및 보너스금리는 자동 재 예치 시점의 해당 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이자지급 방식】

① 이자지급 방식은 월이자 지급식,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자 지급일이 휴일 또는 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그 익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 후 이자지급은 휴일기간에 대하여 기본금리, 우체국장우대금리, 주니어금리, 보너스금리를 합하여 지급한다.

⑤ 예금주는 신규 가입 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단수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중도해지】

신규 가입 시(또는 자동 재 예치 시)의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월이자 지급식의 경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11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당시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자동 재 예치】

① 신규 가입 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자동 재 예치 약정이 가능하다.

② 최초 가입기간 만기 시 원리금(세금공제 후)이 1년 단위로 자동 재 예치되며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18년(만 19세 미만까지) 자동 재 예치된다.

③ 자동 재 예치 시 기본금리, 우체국장우대금리, 주니어금리 및 보너스금리는 매 재 예치 시점의 고시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분할해지】

① 최초 가입금액(또는 자동 재 예치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 분할해지 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 지급 후 잔여 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또는 자동 재 예치 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 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③ 분할해지 이율은 신규 가입 시(또는 자동 재 예치 시)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세금관계】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가입이 가능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5. 이웃사랑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이웃사랑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실명의 개인이며 1인 1계좌로 한한다.

① 사회 소외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 가족, 소년 · 소녀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② 사랑 나눔 실천자

1.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2.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

③ 농어촌 지역 주민 : 읍 · 면단위 지역 거주자

제4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6조【기본이율】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우대이율】

①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

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체국장우대금리 : 신규가입일 현재 기간별, 금액별 우대이율 적용

③ 사랑금리 : 다음 각 호에 해당 시에 가입금액별 차등금리 제공(최고 연 0.3%p)

1.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고객 : 1억원 이하 0.3%p, 1억원 초과 0.2%p
2.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헌혈자(5회 이상), 입양실천 고객 : 1억원 이하 0.3%p, 1억원 초과 0.2%p
3.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 : 1억원 이하 0.2%p, 1억원 초과 0.1%p

④ 보너스금리 : 다음 각 호에 해당 시에 항목 당 연 0.1%p씩 우대이율을 적용(최고 연 0.2%p)

1. 이웃사랑자유적금 만기 해지 후 전환가입
2. 소외계층의 정기적인 정부지원금주[1] 을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매월 수령

※ 주1 : 수급자(소년소녀가정)의 생계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조손가정)의 아동양육비

3. 우체국 장애인복지체크카드 이용고객

⑤ 우대이율은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③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에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적용한다.

1. 「사랑금리」해당 고객은 각 항목별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이웃사랑자유적금 만기 전환가입」은 이웃사랑자유적금 만기해지일과 이웃사랑정기예금 신규가입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3. 「취약계층의 정기적인 정부지원금」은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의 생계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의 아동교육비에 한하며 우체국 요구불예금 통장 및 전산조회(최근 3개월 거래내역 확인)로 매월 입금됨을 확인하되, 입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서류로 확인한다.

4. 「우체국 장애인복지체크카드 이용고객」은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① 이자지급방식은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자지급일이 휴일 또는 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그 익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모든 우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⑤ 예금주는 신규 가입 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0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를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단수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1조【중도해지】

신규 가입 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월이자 지급식의 경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분할해지】

① 최초 가입액의 90% 범위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분할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② 분할해지는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만기일시지급식이어야 가능하며 최소 1만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당시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과세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제15조【기타】

① 우수고객우대금리, 고액예금우대금리 및 본부장우대금리 지급이 불가하다.
② 질권설정은 우체국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6. 2040$^{+\alpha}$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2040+α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의 성격】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금융기관 제외)

제4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 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6조【기본이율】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고시한 챔피언정기예금의 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한다.

제7조【우대이율】

①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체국장우대금리 : 신규가입일 현재 기간별, 금액별 우대이율 적용

③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최고 연 0.4%p

1. 급여이체 시 연 0.1%p
2. 신용카드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시 연 0.1%p
3.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 시 연 0.1%p
4. 2040+α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연 0.1%p
5. 우체국 요구불예금 3개월 평잔 유지시 우대금리 제공(개인 100만원/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500만원) 연 0.1%p

6.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인 경우 연 0.1%p

④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의해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에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적용한다.

1. 급여이체자는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요구불 예금으로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 이체' 또는 '급여이체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실적과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분
2. 신용카드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요구불 예금으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는 분
3. 우체국 체크 및 제휴카드 발급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요구불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여 발급된 우체국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분
4. 2040+α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은 동일자에 2040+α자유적금을 만기해지하고 2040+α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5. 우체국 요구불예금 3개월 평잔(개인 100만원/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500만원) 고객이 가입하는 경우
6.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수고객인 분

제9조【이자지급방식】

① 이자지급방식은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자지급일이 휴일 또는 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그 익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모든 우대이율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⑤ 예금주는 신규 가입 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0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어 단리 계산하

되, 이자의 10원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특별중도해지】

① 예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의 유학, 결혼, 이민,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 1개월 전 후에 우체국에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학 : 입학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2. 결혼 :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
3. 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이민 확인서류 및 항공권
4.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 퇴직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제14조【분할해지】

①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 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기타】

① 이 예금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② 고액예금우대금리 및 본부장우대금리 지급이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 예금담보 대월약정이 가능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7.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약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사업자이다.

제4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한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6조【적용이율】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자동재예치 당시 우체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8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어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9조【자동재예치】

① 가입기간 내에 예금주의 해지요청이 없는 한 만기시의 원금과 이자는 최초 가입기간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재예치된다.

② 자동재예치 시 우체국이 예금주에게 통지할 사항은 해당 전문으로 대신한다.

제10조【중도해지】

이 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자동재예치 당시 우체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특별중도해지】

이 예금은 각 항에 해당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신규 가입일 또는 자동재예치 당시 우체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 퇴직연금 정기예금 예치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아래 사유에 해당 시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하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라.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

바.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③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⑤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⑥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⑦ 수탁자의 사임

⑧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운용 또는 자산운용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유

⑨ 계열사내 전직, 사업장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우체국 내 계약이전

⑩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제12조【분할해지】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근로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단, 다음의 사유로 해지시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산정되지 않으며 제한이 없다.

가.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나.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② 자동재예치 시 분할 해지 횟수는 새로 산정한다.

제13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주와 우체국간의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전산 중계망을 통한 전문(電文)으로 거래하며, 통장은 발행하지 않는다.

② 이 예금은 질권 설정, 담보제공 및 양도・인수가 불가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5월 22부터 시행한다.

2-8. 스마트 정기예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스마트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우체국 스마트폰뱅킹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 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6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스마트폰뱅킹에 게시된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인터넷뱅킹우대금리에 연 0.2%p를 가산 적용한다.
단, 인터넷뱅킹우대금리는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를 적용한다.

③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7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 시 일시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8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어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9조【중도해지】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스마트폰뱅킹에 게시된 정기예금 중도 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스마트폰뱅킹에 게시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1조【과세구분】

① 일반과세, 생계형, 세금우대로 가입 가능하다.

② 세금우대, 생계형 가입 대상자는 연령요건으로만 가능하다.

제12조【기 타】

①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예금가입증서는 출력할 수 있다.

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우체국 인터넷뱅킹에 등록한 출금계좌(이하 '모계좌'라 함)에서 이체된다. 이 예금은 해지 시 모계좌로 이체된다.

③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④ 이 예금은 우수고객 우대금리 지급이 불가하다.

⑤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약정이 가능하다.

⑥ 질권설정은 우체국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1. 2040$^{+\alpha}$자유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2040+α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 기본 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의 성격】

이 적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금융기관 제외)으로 한다.

제4조【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적립금액】

신규 가입 시 최저 1만 원 이상이며 2회 차 이후로는 1원 단위로 적립이 가능하며 1인당 매 분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적립일 및 적립횟수를 정하지 않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도 가능하다.

제6조【기본이율】

신규 가입일 현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고시한 정기적금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우대이율】

①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최고 연 0.4%p 이다.

1. 급여이체 시 연 0.1%p
2. 신용카드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시 연 0.1%p
3.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 시 연 0.1%p
4. 월 50만원 이상 우체국 요구불 예금에서 동 적금으로 만기까지 자동이체 시

연 0.1%p

5.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인 경우 연 0.1%p

②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의해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적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에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적용한다.

1. 급여이체자는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요구불 예금으로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 이체' 또는 '급여이체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실적과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분
2. 신용카드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요구불 예금으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는 분
3.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요구불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여 발급된 우체국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분
4. 월 50만원 이상 우체국 요구불 예금에서 동 적금으로 만기까지 자동이체한 분
5.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수고객인 분

제9조【이자지급방식】

①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10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특별중도해지】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의 유학, 결혼, 이민,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 1개월 전 후에 우체국에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학 : 입학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2. 결혼 :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
3. 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이민 확인서류 및 항공권
4.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 퇴직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제14조【기타】

① 이 적금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② 이 적금은 예금 잔액의 95%범위내에서 정해진 한도액까지 예금담보 대월약정이 가능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2. 인터넷/스마트 2040$^{+\alpha}$자유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인터넷/스마트 2040$^{+\alpha}$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적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우체국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가입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제4조【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가입금액】

이 적금의 가입금액은 가입시 1만원 이상, 매 분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제6조【적용이율】

① 이 적금의 이율은 가입 시 우체국 창구,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스마트폰뱅킹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기간별 기본이율
- 우대이율 : 각 항목별 연 0.1%p (단, 최고 연 0.4%p 적용)

① 급여이체 기 약정 고객(개인에 한함)
② 신용카드 가맹점 기 약정 고객
③ 우체국 체크카드 기 발급 고객
④ 우체국계좌에서 월 50만원 이상 동 적금으로 만기까지 자동이체시
⑤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가입 고객

②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해지는 가입 시 우체국 창구,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스마트폰뱅킹에 게시된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율 또는 만기 후 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③ 이 적금은 휴일도 만기일에 포함하며,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만기 해지가 가능하다. 단, 만기일이 휴일이어서 그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8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9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적금의 가입은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② 이 적금은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및 인터넷뱅킹으로 만기 또는 중도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체국 창구에서도 해지는 가능하다.
③ 이 적금의 만기 자동해지 신청 예금은 만기일이 영업일인 경우 자동으로 모계좌에 이체되나, 만기일이 휴일(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익 영업일에 이체된다.
④ 이 적금은 특별중도해지가 불가하다.

제10조【과세구분】

① 일반과세, 생계형, 세금우대로 가입 가능하다.
② 세금우대, 생계형 가입 대상자는 연령요건으로만 가능하다.

제11조【기타】

① 이 적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예금가입증서는 출력할 수 있다.
② 이 적금의 가입금액은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등록된 출금계좌(이하 '모계좌'라 함)에서 이체된다.(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이 적금의 해지 시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된다.
④ 이 적금은 우체국 창구에서 예금담보대월 약정이 가능하다.
⑤ 질권설정은 우체국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⑥ 이 적금은 분할해지 및 예금우수고객 우대금리 지급이 불가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우체국 Smart 퍼즐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Smart 퍼즐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생계형저축 약관", "세금우대종합저축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 및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적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개인으로 한다.(1인 1계좌)

제4조【가입기간 및 적립금액】

①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로이 정한다.
②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부터는 원단위로 적립가능하다.
③ 최대저축한도는 2,000만원이며 분기당 300만원 이내로 입금이 가능하다.

제5조【목표금액】

① 목표금액은 가입 시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하며, 중도변경 불가하다.
② 가입기간 중 최대저축한도 이내로 목표금액 초과 입금이 가능하다.
단, 생계형·세금우대로 가입 시 목표금액 초과 입금은 생계형·세금우대 저축한도설정금액 이내로 가능하다.

제6조【적용이율】

① 이 적금의 이율은 가입 시 스마트폰 뱅킹,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이 적금의 이율은 만기해지(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포함)시 기본이율에 각 호의 해당 우대이율을 합산 적용한다.
- 기본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정기적금 기간별 이율-연 0.1%p
- 우대이율 : 각 호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최고 연 1.2%p)
1. 추천우대이율(최고 0.2%p)

신규 가입 시 생성되는 본인의 추천번호를 타인이 가입 시 입력할 경우 본인 및 타인 모두 각각 0.1%p (단, 가입 시 생성된 추천번호는 최고 0.2%p 우대이율 획득 시 사용 불가)

2. 목표금액 달성이율(0.5%p)
   가입 시 고객이 설정한 목표금액을 해지 시까지 달성할 경우
3. 자동이체 우대이율(0.2%p)
   가입 시 적금 자동이체 1만원 이상 설정 후 해지 시까지 유지할 경우
4. 퍼즐완성이율(최고 0.3%p)
   해지 시까지 퍼즐미션 수행으로 제공된 스탬프 총 수량에 따라 제공

<스탬프 총 수량>

예치기간 / 이율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0.3%p	20장이상	30장이상	40장이상	50장이상	60장이상	80장이상	100장이상
0.2%p	10장이상 ~ 19장이하	15장이상 ~ 29장이하	20장이상 ~ 39장이하	25장이상 ~ 49장이하	30장이상 ~ 59장이하	40장이상 ~ 79장이하	50장이상 ~ 99장이하
0.1%p	9장이하	14장이하	19장이하	24장이하	29장이하	39장이하	49장이하

③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해지는 가입 시 스마트폰 뱅킹,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된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율 또는 만기 후 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8조【이자계산】

이자계산기간은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 입금 건별 불입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

제9조【중도해지】

가입 후 6개월 미만 해지 또는 가입 후 6개월 경과했으나 목표금액 미달성으로

만기 전 해지 시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0조【특별중도해지】

①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목표금액을 달성하여 만기 전 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중도해지 이율은 신규 가입일 당시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이율에 특별중도해지 시까지 충족한 항목별 우대이율을 합산한다.

제11조【가입 및 해지】

① 이 적금의 가입은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② 가입 시 지정 모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이체되는 퍼즐이체 약정을 한다.

③ 해지는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④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스마트폰 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만기해지가 가능하다.

⑤ 이 적금의 만기 자동해지 신청 예금은 만기일이 영업일인 경우 자동으로 모계좌에 이체되나, 만기일이 휴일(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이체된다.

제12조【과세부분】

① 가입 시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중 선택한다.

② 세금우대, 생계형 가입 대상자는 연령요건으로만 가능하다.

제13조【기타】

① 이 적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예금증서는 출력할 수 있다.

② 이 적금의 적립금액은 출금계좌로 등록한 계좌(이하 “모계좌”라 한다)에서 이체된다.

③ 해지 시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된다.

④ 이 적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⑤ 이 적금은 우체국 창구에서 예금담보대월이 가능하다.

제14조【퍼즐적금 알리미(Push Notification)】

① 퍼즐적금 알리미 서비스에 의한 퍼즐이체 시 스탬프가 제공된다.

② 이 서비스 제공여부는 선택이 가능하나 고객의 거부 등으로 우대 이율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① (우체국 **Smart** 퍼즐적금 특약) 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4. 우체국 재형저축 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우정사업본부 (이하 “우체국” 이라고 한다) 와의 「우체국 재형저축」(이하 “이 예금” 이라고 한다) 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은 적립식예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제4조【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① 이 예금은 분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만원 이상으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단, 가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도이다.

② 우체국은 세금우대저축한도집중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저축 가입 가능 한도를 조회 · 확인 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세율의 적용】

①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1. 이 약관 제3조 각 호의 가입자격, 제4조 제1항의 분기 가입한도, 제5조 제1항의 계약기간, 제8조 제1항의 가입자격 확인서류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2.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② 위 1항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금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제7조【중도해지와 세율의 적용】

① 이 예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나.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고객

다.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예금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이하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고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2.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제1호에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 천재 · 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8조【가입자격의 검증】

① 이 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체국은 고객이 우체국에 제출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및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3조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가입 처리한다.

④ 제3항의 우체국의 가입자격 확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고객이 제3조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고객이 가입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우체국에 통지한다.

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검증절차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우체국에 그 사실이 통지된 경우 그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 입금과 이자의 제공이 중단된다.

⑥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이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우체국에 그 사실이 통지된 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가입자격 부적격 판정 통보 및 의견제시】

① 우체국은 국세청으로부터 고객이 이 예금에 대한 가입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통보를 받을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우편(등기취급)으로 알린다.

② 고객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체국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고객은 위 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망,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

출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제시 받은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며, 고객의 이의가 수용되어 가입 자격이 적격으로 다시 판정되고 국세청이 이를 우체국에 통보한 경우 우체국은 제8조 제5항에 의거하여 중단된 입금이 다시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한다.

제10조【제한사항】

① 이 예금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이 예금은 계좌분할 및 일부 해지 할 수 없다.

③ 이 예금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④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른다. 다만 은행은 그 변경 사항을 즉시 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린다.

*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 약관변경

① 우체국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율의 적용】

① 이 예금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되, 가입일로부터 최초 3년 간 확정금리(기본이율 및 우대이율)를 적용하고, 3년 이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는 변동금리(기본이율)를 적용하여 해지 시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12조【중도해지이율】

① 이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 당시 우체국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적용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에 중도해지 할 경우 :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2.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중도해지 할 경우 : 이 예금의 기본이율 적용

② 이 예금을 제7조 제2항에 의해 특별해지를 하는 경우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예금의 기본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만기후이율】

이 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지급청구 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이 예금의 기간별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우대이율】

이 예금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간 최고 연 0.3%p까지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1.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주1)]이 있는 경우 : 연 0.1%p
2.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
3.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거래 실적[주2)]이 있는 경우 : 연 0.1%p
4.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 연 0.1%p

주1) 급여이체는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이체' 또는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주2) 우체국 스마트폰뱅킹을 활용하여 수시입출식 통장에 입출금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우체국 예금상품에 가입한 경우

부 칙 (상품내용 변경)

구 분 (시행일자)	내 용	관련조항	비 고
2015.8.6.	상품 내용 일부 변경	제7조 제8조 제9조	개정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015년 8월 6일 이후 가입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5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자는 실명의 개인으로 패키지별로 구분한다.

※ 패키지별 1인 1계좌 (최대 1인 2계좌까지 가능)

가입구분	새출발 희망	새출발 행복
가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헌혈자, 입양자, 장기·골수기증자, 다자녀가정, 부모봉양자, 농어촌 읍 . 면단위 거주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 협동조합종사자, 소상공인

② 이 예금의 가입대상자에 대한 정의 및 해당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다.

새출발 희망		확인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자증명서
근로장려금 수급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	근로장려금결정 통지서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수급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결혼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	가족관계증명원 및 혼인관계증명서

새출발 행복		확인서류
헌혈자	좌 동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
입양자	좌 동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장기.골수기증자	좌 동	장기.골수기증 희망등록증 등
다자녀가정	가입일 현재 만 19세 미만 자녀수가 3명 이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봉양자	가입일 현재 만 20세 이상 가입자가 부모 봉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농어촌 읍.면단위 거주자	좌 동	주민등록등(초)본
신용등급7등급이하개인	좌 동	실명확인증표 및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협동조합종사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 납입증명서 또는 조합원증명서
소상공인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납입 회차당 월 1만원 이상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한다.

1. 신규 가입일 현재 희망 또는 행복패키지 가입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 연 0.2%p
2. 만기일 당시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 실적 금액별 차등 적용하며, 희망패키지는 최고 연 2.0%p, 행복패키지는 최고 연 0.3%p 제공

구 분	제공조건		이율 (연, %p)	
			희망	행복
가입자 우대	가입대상자 우대금리		0.2	
자동이체 거래 우대	우체국 수시입출식 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	0.1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5	0.2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2.0	0.3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가입자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가입대상자에 해당 할 경우 전체 가입 기간 동안 적용한다.

③ 자동이체 거래 우대이율은 만기일 당시 아래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모두 해당 할 경우 전체 가입기간 동안 적용한다.

1. 만기일 당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월 납부금 자동이체 된 횟수가 계약월수의 2/3 이상
2. 납입된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월 평균 금액이 금액대별 실적에 해당할 경우

※ 예1) 새출발 희망패키지, 가입기간 12개월 - 총 12회차 납입의 경우 → 8회차(12X2/3)이상이 우체국 수시입출식 계좌를 통한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에 해당하며

예2) 1회차~4회차까지 15만원, 5회차~8회차까지는 25만원을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 → 월 평균 금액은 20만원 (15x4+25x4)/8 이므로 가입자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2.2%p 우대금리 제공

※ 단, 계약월수의 2/3 개월수가 소수점까지 나올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 계약기간이 8개월, 계약월수의 2/3 = 5.3 개월일 때 5개월로 산정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자동만기해지 시 이자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특별중도해지】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의 주택구입, 입원, 출산,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 1개월 전 후에 우체국에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2. 입원 : 입원 확인서 (2주 이상)
3.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4. 유학 : 입학 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5.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6. 이민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7. 퇴직, 폐업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제14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제15조【기타】

① 이 예금은 양도·양수가 불가하다.
② 이 예금은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하다.
④ 이 예금의 질권설정은 우체국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⑤ 이 예금의 판매한도는 50,000좌로 한다. (※ 단, 새출발 희망 패키지에 한함)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6 우체국 다드림(多Dream) 적금 특약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다드림 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축방법】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0%p를 제공한다.

1. 가입 시 우체국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 : 연 0.1%p
2. 가입 또는 만기해지 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 연 0.1%p

3. 다드림 적금 3년 만기 가입 시 : 연 0.2%p
4. 급여이체, 연금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다드림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중 매월 2가지 이상 실적 해당 시 : 연 0.4%p
5. 다드림 통장 (월평잔 100만원 이상) 또는 다드림 체크카드 (월 10만원 이상) 이용실적 해당 시 : 연 0.2%p

구 분	제공조건	이율 (연, %p)
고객 우대	가입 시 우체국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	0.1
	가입 또는 만기해지 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0.1
장기 우대	다드림 적금 3년 만기 가입 시	0.2
주거래 우대	급여이체, 연금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다드림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중 매월 2가지 이상 실적 해당 시	0.4
파트너 우대	다드림 통장(월평잔 100만원 이상) 또는 다드림 체크카드(월 10만원 이상) 이용실적 해당 시	0.2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고객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장기거래 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예금을 최초로 계좌 개설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단, 예금 가입 취소는 장기거래 고객 산정 기준에서 제외

2.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은 신규 가입일 또는 만기해지 시점에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인 경우

③ 장기 우대이율은 다드림 적금을 3년으로 가입을 하고 만기해지 할 경우 적용한다.

④ 주거래 우대이율은 실적 인정기간[주1] 동안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우대요건 중 매월 2가지 이상의 실적이 충족되는 개월수가 (1년제 : 6개월, 2년제 : 12개월, 3년제 : 18개월)[주2]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 주1」실적 인정기간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까지
(예시) '15.12.10일 1년 만기 다드림 적금 가입 시 실적인정기간 : '15.12월부터 ~ '16.1월까지

※ 주2」실적 충족 개월 수 산정은 연속된 개월 수 뿐만 아니라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

1. 급여이체는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이체' 또는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실적' 이 있는 경우

2. 연금수령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 입금되거나 입금 내역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글자가 있는 경우
3. 공과금 자동이체는 아파트 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납부자 자동이체, 예약이체 제외)
4. 적금 자동이체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다드림 적금으로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⑤ 파트너 우대이율은 실적 인정기간[주1] 동안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우대요건 중 1가지 이상의 실적이 충족되는 개월수가 3개월 이상[주2] 인 경우 적용한다.

1. 다드림 통장의 월 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다드림 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 주1」실적 인정기간은 신규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까지

※ 주2」다드림 통장 및 다드림 체크카드의 실적은 연속된 개월 수 뿐만 아니라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 (단, 다드림 체크카드 승인 취소는 실적 산정에서 제외)

제9조【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한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2.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이자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특별중도해지】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구입, 입원, 출산,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2.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3. 입원 : 입원 확인서 (2주 이상)
4. 유학 : 입학 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5.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6. 이민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7. 퇴직, 폐업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추가 제출

제13조【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4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5조【기타】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② 이 예금은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③ 이 예금의 판매한도는 10,000 계좌로 한다.
④ 이 예금은「다드림 패키지 우대서비스」에 따라 다드림 통장에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의 가입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1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환매부조건부채권매도(이하 '조건부채권매도'라 한다)업무를 영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환매부조건부채권(이하 '조건부채권'이라 한다) 매입을 하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채권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 【조건부채권매도의 내용】

① 조건부채권매도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건부채권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하며 필요 시 액면을 분할할 수 있다.

③ 분할매도 시 최저 한도액은 50,000원으로 하고 10,000원 단위로 초과할 수 있다.

제3조 【조건부채권매도의 성립 등】

① 조건부채권매도는 고객이 거래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 계좌를 설정한 후, 매수대금을 납입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객에게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우체국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환매수】

고객은 약정기일에 미래창조과학부에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환매수 가격】

① 미래창조과학부의 환매수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10원 단위로(10원 미만 절사) 계산한다.

o 환매수가격 = 조건부채권매도가격 × (1 + 약정일수/365 × 조건부채권매도이율)

② 조건부채권매도 약정기간중에 매도된 채권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원천

징수차액을 차감)은 제1항의 환매수 가격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산식 중 조건부채권매도이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6조 【이율의 게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조건부채권매도 이율표를 고시한 후 우체국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 【약정기일 전후의 적용이율】

미래창조과학부는 조건부채권매도에 있어서 약정기일전후에 환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중도환매수이율은 환매일수일까지의 해당 기간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 【매도채권의 보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매도채권을 보관,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매수 가격 및 이율 등이 기재된 매매계산서와 통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계산서는 환매수일이 확정된 경우 교부할 수 있으며, 통장에 환매수가격 및 이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채권을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채권이 환매수일 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매도채권의 종목대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채권을 보관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환매수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중인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계좌의 폐쇄】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객의 잔고가 '0'이 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1조 【인감의 신고 등】

① 고객은 조건부채권매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인감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통장이나 신고인감을 분실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우체국에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객의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약관을 우체국에 비치하고 고객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법규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체신관서의 국채·공채 매도 증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양도 등의 제한】

고객은 통장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 유증판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